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I. 논문 제출의 기준과 절차

1. 『공공정책연구』 투고논문은 사회과학 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독창성을 가진 학술 논문으로서 타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공공정책연구』의 투고자격은 박사 또는 동등의 자격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저자(교신저자)로 1인 1편의 논문을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저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호에 최대 2편까지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다.
4. 『공공정책연구』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원고 접수는 언제든지 받는다. 출간일은 매년 4월, 8월, 12월 말이며, 논문을 출간하고자 하는 발행예정일 보다 2개월 이전에 투고해야 한다. 단 투고논문 수에 따라 원고마감이 연장, 또는 원고가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지방자치연구소 편집규정 제9조 참고).
5. 『공공정책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정해진 기일 안에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local.deu.ac.kr>) 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메일(지방자치연구소 전자우편: localautonomy@deu.ac.kr) 원고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투고자는 원고를 메일로 제출할 때,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투고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성실히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간 대상 조사는 IRB 승인서를 제출하며, IRB승인서가 없는 경우는 연구윤리서약서로 대신한다(10항 참고).
7.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수정하여 원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첫 장에 각주로 명시해야 한다.
8. 본 학술지에 투고하고 심사기간 중 타 학술지에 이중투고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논문도 투고 할 수 없다.
9. 표절이나 저자로서 역할이 없이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논문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투고가 무효화된다. 또한 저자는 1년 동안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10. 공공정책연구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을 적용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한 경우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없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여 연구가 진행된 경우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적용하여 위반사항이 없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연구윤리서약서 제출).
11. 게재료는 20만원이다(논문 심사료 없음). 연구비수혜 사사표기 논문은 15만원의 게재료를 추가한다.

II. 원고의 분량

1. 게재 신청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표, 그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페이지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초과분에 대한 인쇄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20페이지

를 넘을 경우 초과 분량에 대해 연구소가 정한 별도의 추가경비(A4 1매당 1만원)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 원고는 '아래흔글(hwp)' 사용하여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용지 여백(A4용지 기준)은 위쪽(23.0mm), 아래쪽(0.0mm), 왼쪽(20.0mm), 오른쪽(20.0mm), 머리말 (12.0mm), 꼬리말(23.0mm), 제본(0.0mm)을 기준이며 이 때,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III. 원고의 형식

1. 원고는 제목, 저자, 국문요약(주제어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2. 국문요약(국문 및 영문)은 A4용지 1매 내로 작성한다.

1) 국문요약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합의,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영문), 저자이름(국·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국·영문), E-Mail주소, 주소 연락전화 등을 명기하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1) 저자이름: 저자이름은 논문제목 아래에 제시하고, 소속, 지위, 이메일 주소는 각 주 처리 한다.

예) 국문: 이 기 정*, 영문, Lee, Kijung*

각주* 한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E-mail: kijung@korea.ac.kr)

각주*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kook University

2) 영문제목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Elder Self Neglect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3) 영문제목과 영문초록은 전문교정을 통해서 국제학술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국·영문 주제어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6.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 가)의 순서를 따른다.

1) I. 로마숫자 (글자크기: 12, 중앙으로)

2) 1.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0.5, 들여쓰기 10)

3) 1) 한글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0)

4) (1) 괄호숫자 (들여쓰기 10)

5) ① 동그라미 숫자 (들여쓰기 10)

6) 가) 반괄호 한글 가), 나), 다) (들여쓰기 10)

7. 원고의 글씨체는 휴먼명조이고, 글씨크기는 다음과 같다.

- 1) 제목 및 초록: 제목 18, 저자명 10, 국문초록 10
- 2) 본문: 10
- 3) 각주: 9.5
- 4) 표 제목 및 내용: 제목 10(제목은 표 위쪽 가운데 위치), 표 내용 9.5
- 5) 그림 제목: 제목 10(제목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 위치)
- 6) 참고문헌: 제목 13, 문헌목록 10
- 7) 줄간격: 160%(단, 표 및 각주 경우 130%)
8. <표> 표 제목은 “<표 번호> 표제목”으로 표기하고, 표 위의 가운데 위치한다.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되, 표 맨 위와 아래 횡선(가로선)은 진한 선으로 하며, 가장자리 종선(세로선)은 선없음으로 한다.
9. <그림> 그림 제목은 “<그림 번호> 그림제목”으로 표기하고, 그림 밑 가운데 위치한다.
10. 표에 대한 주는 개별주 a), b), c)의 기호사용), 확률주(예: * $p < .05$, ** $p < .01$, *** $p < .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 그림에 대한 주도 이에 준한다.
11.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주, 표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12.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13. 원고의 인용 및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IV. 원고작성시 집필요령

1.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의 예(저자, 연도, 페이지순)
 - 김준호(2015)와 이윤호(2018)에 의하면...
 - Lab(2014)에 따르면,
 - 최인섭(2012)과 Berg(2015)를 들 수 있다.
 - ※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 경찰법 제11조 4항에서는...
 - ※ 특별한 저자 없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 2018년 경찰사료연감(2019)에 지시된...
-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의 예
 -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순래, 2014; 김보환 등, 2017; Berg, 2015).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예: Green & Taylor, 2011:20; Eisenberg et al.,

2013)

- ...라고 볼 수 있다(최응렬, 2018; 연성진, 2011; 이민식, 2012; 박정선, 2014; 광대경 2015:50).
- 3) 같은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 인용될 때의 예(연도가 같은 경우)
- ...이다(이순래, 2017a)
 - ...이다(이순래, 2017b)
- 4)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대표 연구자의 이름만 적고 등(외 또는 et al.)으로 표기한다.

[참고문헌]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단,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는 참고문헌(학술논문)의 경우는 이를 제시한다.
2.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출판연도, 서명/진하게, 출판사항]
 -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2011).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일반논문인 경우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진하게 및 발행권호, 페이지, DOI]
 - 강은나, 이민홍. (2018).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 성향매칭분석을 통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 **보건사회연구**, 38(4), 196-226. doi.10.15709/hswr.2018.38.4.196
 - 3)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진하게, 수여기관 및 학위성격]
 - 박철현. (2016). **범죄경력에 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 및 교정기록을 통한 중단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 [논문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진하게,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김창준, 안영만. (2016).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형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법문사.
 - 5)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출판연도, 서명/이탤릭, 출판사항]
 - Clor, H. M. (2017). *Obscenity and Public Morality - Censorship in a Liberal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6)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탤릭 및 발행권호, 페이지, DOI]
 - Aldrich, D. P., & Meyer, M. A. (2015).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9(2), 254-269. doi.org/10.1177/0002764214550299

- 7) 외국논문으로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 [논문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이탤릭,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Green, J. C. & Taylor, R. B. (1988). Community-Based Policing and Foot Patrol: Issues of Theory and Evaluation, In J. R. Green & Green & S. D. Mastrofski (ed.), *Community Policing: Rhetoric or Reality*, 195-223. New York: Praeger.
-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출판연도, 책제목/이탤릭, 출판사, 번역자, 출판연수, 저서명, 출판사]
 - Hirschi, T. (2017).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Free Press (문근영 역. 1995.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박영사).
- 9) 홈페이지 자료: 자료 제목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한다.
 - 예) 통계청. (2019). **2018년 한국 고령자 통계**. 홈페이지 주소.

3. 본 논문작성 요령에 부합되지 않은 원고는 편집 원칙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으며, 기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publication manual을 준용한다.

V. 저자의 익명성 처리

1. 논문 기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겉표지 외에는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 인터넷주소, 동료에 대한 감사의 글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